



제 1137 호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령 제2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2

공 고

- 공고 제2013- 1542호 2013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10
- 공고 제2013- 1546호 공시송달 공고 13
- 공고 제2013- 1548호 공영주차장 급지선정 및 유료화 공고 14
- 공고 제2013- 1550호 공인신조 공고 15
- 공고 제2013- 1558호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 이륜차량 강제
처리(폐차)공고 16
- 공고 제2013- 15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안) 공고 18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제2013- 33호 예정공고 23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제2013- 34호 예정공고 24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시설물멸실)
공고 제2013- 35호 공시 27

고 시

- 고시 제2013- 109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29

회 람								
----------------	--	--	--	--	--	--	--	--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1월 1일

남동구 훈령 제2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 의회사무국의 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주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관련

유 형 별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 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사실을 확인 하였을 경우” 라 함은 횡령 혐의자가 횡령 사실 및 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 행위자가 사실 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① 감사실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를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경우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묵인행위에 대한 책임)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고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

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제7조제3항 관련)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무처 :

2. 고발취지

3. 고발내용

4. 증 거 물

년 월 일

고 발 인 (인)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제8조제1항 관련)

연번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 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제8조제2항 관련)

다음과 같이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년 월 일에 고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현소속 :

비위행위당시 소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범죄혐의사실

첨부 : 1. 범죄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부.
2. 고발장 1부. 끝.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각종 부패 행위 발생에 대한 공직 사회의 국민적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은 물론,
- 공직사회의 부패 불감증 해소의 일환으로 직무관련 범죄 행위 시 사법기관에 고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조기에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발 적용 범위 및 대상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 규정에 포함하는 자)
 - 직무 관련하여 형법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행위 등
- 고발 주체 및 고발 대상 기준 마련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범죄 혐의 사실 발견시 구청장은 범죄 행위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
 - 고발 대상 기준 등
- 고발 시기 및 처리 상황 관리 (제7조 및 제8조)
 - 범죄행위 사실 확인 즉시 고발 원칙(사실을 시인한 경우)
 - 범죄혐의 사실 요지 및 처리내용 상황부 작성 관리 등
- 고발 대상 목인에 대한 책임 조치 (제9조)
 -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직무 태만” 으로 판단 징계 등
- 공직유관 단체에 대한 조치 (제11조)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 규정을 제정 및 시행 조치 등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1542호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3.1.1 ~ 6.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정 · 공시

- 기 준 일 : 2013. 7. 1기준
- 대 상 : 281필지
- 결정·공시일 : 2013. 10. 31.
-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나. 이의신청

- 기 간 : 2013. 10. 31. ~ 11. 29.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 453-6153, 6154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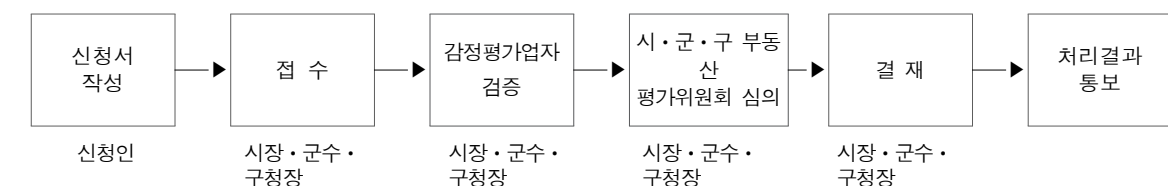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Ministry Decree under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Appraisal Act[Annex No. 6]

Appeal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2 of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Appraisal Act, and Article 21 of the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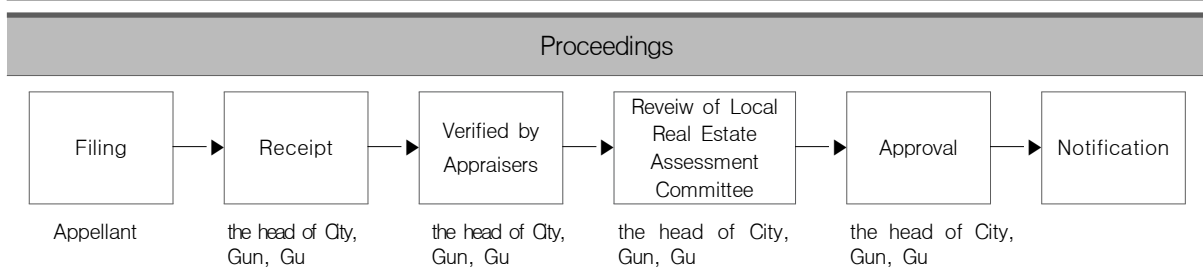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210mm×297mm[Ordinary Paper 60g/㎡(Recycled)]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15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년 10월 31일 ~ 2013년 11월 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2. 당사자	성 명	김광식	주민등록번호	660505-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송남로 69번길 24-9, 000호(만수동, 부원주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4.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00-7 롯데맨션 1동 401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액 : 금4,900,000원(금사백구십만원정)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7. 유의사항		납부대상자께서는 2013.11.15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부동산 압류는 물론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1548호

공영주차장 급지선정 및 유료화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제2호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유료화에 따른 급지 및 운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시행일 : 2013. 11. 01

2. 급지 및 운영사업자

구분	주차장명	면수	급지	운영사업자
노외	석촌제2호	20	2급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3. 주차요금

구분	급지	1회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노외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1550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자함

○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3. 10. 31

○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 신조(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인		한글전서체 3.6cm×3.6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인		한글전서체 3.6cm×3.6cm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고 제 2013 - 1558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이용 가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코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 11. 01 ~ 11. 20 (20일 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 : 2013. 11. 20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이륜차 11대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3년 11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연번	소유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차량사진
484 (2012년)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논현동553-9호(논 곡중교 뒷편) 앞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485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3동 214-2호(고가 밑) 앞 도로변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497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구월동 모래내시장 서문(롯데리아 쪽) 옆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06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남촌동 풍림1차@ 101동 앞 도로변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26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3동90-14호 우정주택 주차장 내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581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구월1동201-163 호 관음사 담옆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06 (2013 년)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구월1동 1158-1호 대원씨티빌 1동~2동 사이 (사유지)	대신편차사업소 (032-569-5511)	
17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논현동617-1호 성지타워 지하주차장 내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2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논현동 593-15호 에덴빌라 주차장 내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8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남동공단 38BL-8LT (주)드림테크놀러지 회사 내 (사유지)	대신편차사업소 (032-569-5511)	
80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구월1동 1172-14호 이행복한세상 원룸 주차장 내	대신편차사업소 (032-569-5511)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56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안)공고(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 그 지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및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해양오염 방지,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 예방,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정·고시 목적(안 제1조)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안 제2조)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안 제3조)
-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안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사유(안 제5조)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안 제6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연년월(안 제7조)
- 과태료(안 제8조)

3. 행정예고기간 : 2013. 11. 1 ~ 11.20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농수산개발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53-6080, FAX : 453-608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낚시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낚시통제구역의 명칭은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으로 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위치) ① 낚시통제구역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지선으로 바다 및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바닷가로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면적) 낚시통제구역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부터 한화교 까지로 가로 1,500미터, 세로 100미터, 면적은 150,000m²로 별표1과 같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낚시통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정한다.

- ①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 ②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③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연월일) 낚시통제구역은 2013. 11. 지정한다.

제8조(과태료)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3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13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0. 30 ~ 2013. 11. 12(14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식품제조 가공업	121	(주)비존푸드	박성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4 114블럭 1로트 협동단지 1동 2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	2012.08.01	2013.11.13
2	식품제조 가공업	255	수아베이커리	임덕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3-17	사업자등록 폐업	2004.12.31	2013.11.13

6. 고 지 사 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1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13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1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0. 31 ~ 2013. 11. 10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명	교부번호	업소명	영업자	업소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말소예정일
1	일반음식점	장서-104	거산가든	한영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재천로39번길 4-1(서창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8.05.31	2013.11.11
2	일반음식점	논고-419	상하이짬뽕 고잔한화지구점	김성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156번길 5-27(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0.31	2013.11.11
3	일반음식점	논고-3	한양떡배기	박복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23, 층(고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0.31	2013.11.11
4	일반음식점	논고-265	굽자나	김종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23(고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4.25	2013.11.11
5	일반음식점	논고-198	미도분식	서영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지하 104호, 105호(고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6.05.30	2013.11.11
6	일반음식점	논고-311	행복한밥상	최민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57, 1층(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30	2013.11.11
7	일반음식점	논고-269	토암골막창구이	박숙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16, 1층(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3.02	2013.11.11
8	일반음식점	논고-252	연길양꼬치전문점	오희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91번길 5-7, 1층(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0.08.30	2013.11.11
9	일반음식점	논현-51	여등치킨	안희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5번길 20, 105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상가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0.12.10	2013.11.11
10	일반음식점	논고-93	도담	임채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45, 203호(논현동, 태성프라자)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4.18	2013.11.11
11	일반음식점	논현-227	그늘집	김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7, 810호일부(논현동, 아이플러스)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1.26	2013.11.11
12	일반음식점	논고-50	염가네왕갈비	임삼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69, 상가비동 108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0.07.05	2013.11.11

13	일반 음식점	논고 -55	맥코원	박연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69, 상가비동 105호(논현동, 논현휴 먼시아하늘마을)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0.08.09	2013.11.11
14	일반 음식점	논현 -111	소래회양념	손상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64, 206호(논현동, 동아씨랜드26)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0.12.31	2013.11.11
15	일반 음식점	간석3 -681	길호프	강신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16번길 3,3층(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1998.06.30	2013.11.11
16	일반 음식점	간석3 -881	발리	신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0-1, 1층(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5.13	2013.11.11
17	일반 음식점	간석2 -319	토종왕족발	유영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81, 1층 4호(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3.25	2013.11.11
18	일반 음식점	간석1 -202	첫사랑	임영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15번길 17(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9.12.31	2013.11.11
19	일반 음식점	간석1 -9	불꽃	김영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15번길 17(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30	2013.11.11
20	일반 음식점	간석1 -501	희선	유수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15번길 17(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8.05.06	2013.11.11
21	일반 음식점	간석 1-402	신왕냉면	이신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15번길 17(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8.14	2013.11.11
22	일반 음식점	간석1 -50	분당포장마차	김영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15번길 17(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12.15	2013.11.11
23	일반 음식점	간석1 -447	홍두깨해물 칼국수	김인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1, 4층(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0.03.25	2013.11.11
24	일반 음식점	간석3 -52	보은호프	김춘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742(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05.18	2013.11.11
25	일반 음식점	간석1 -517	무진장회타운	이창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54, 1층(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8.13	2013.11.11
26	일반 음식점	간석2 -333	봉채국수 (간석점)	박재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66, 2동 109호(간석동, 간석래미안 자이아파트상가)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4.13	2013.11.11
27	일반 음식점	만수2 -229	용해물탕	박주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이산로 157, 107호(서창동, 서창자이 아파트단지상가)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09.26	2013.11.11
28	일반 음식점	만수1 -153	무지개분식	권경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105, 701동 207호(만수동, 만수주공 아파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5.07.31	2013.11.11
29	일반 음식점	만수2 -388	해밀뜨락	지한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3번 길 20-21,1층 103호(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02.22	2013.11.11
30	일반 음식점	만수2 -27	돈떡	이숙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5 번길 18-27(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30	2013.11.11
31	일반 음식점	만수2 -29	풍성한집	최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5 (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2.23	2013.11.11
32	일반 음식점	만수2 -9	술통나라	이춘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 번길 115(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2.28	2013.11.11
33	일반 음식점	만수3 -16	하이스코(만 수5점)	사공혜 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4-4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4.02.13	2013.11.11
34	일반 음식점	만수3 -175	고향맛동태탕	박현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관로 32-19,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0.25	2013.11.11
35	일반 음식점	만수2 -374	지짐이만수시 장점	서용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 1 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1.31	2013.11.11
36	일반 음식점	만수5 -432	유진수산어가	임화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 번길 25-2(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9.03.06	2013.11.11
37	일반 음식점	만수5 -253	신의주참쌀순 대	백은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3, 103호, 104호(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05	2013.11.11
38	일반 음식점	만수5 -379	미소루	김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 번길 15-22,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1.01	2013.11.11

39	일반 음식점	만수5 -50	마음에담꼬	전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42번길 7,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10.24	2013.11.11
40	일반 음식점	만수1 -648	왕선족발	남현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 길 4-15,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30	2013.11.11
41	일반 음식점	만수1 -202	해피데이	이선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64, 1층(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2.31	2013.11.11
42	일반 음식점	만수1 -408	후레쉬푸드	유선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28-14, 102호(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30	2013.11.11
43	일반 음식점	구월3 -261	까스동	김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7 번길 1,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1.30	2013.11.11
44	일반 음식점	구월3 -748	성원	이승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 번길 8-9, 1층, 2층(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2.31	2013.11.11
45	일반 음식점	구월2 -263	칼국수먹고 싶을만두하지	강유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4,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1.31	2013.11.11
46	일반 음식점	구월4 -157	포그니	송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0번길 3 (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1.14	2013.11.11

6. 고 지 사 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1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
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3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5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3. 10. 31 ~ 2013. 11. 14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휴게 음식점	간석 4휴-6	대원다방	박현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95, 지하1층 (간석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 청문일시 : 2013. 11. 15. (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위생팀 032-453-262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09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망실로 인하여 재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98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지역좌표계		가리좌표계	
	X(m)	Y(m)	X(m)	Y(m)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지역(중부), 기타(가리)			
소 재 지	별첨			
표 지 재 질	표철 및 맨홀(지적도근점)			
설 치 일 자	2013년 8월 24일(지적도근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98점(재설치)			

지 적 기 준 (도 근) 점 성 과 표

일련 번호	도근 번호	도 선 등 급	도 선 명	표지 재질	토지소재지	지적 (임야)도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가리좌표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중부좌표				세계측지좌 표				원점	표 고	조사연월일	조사자		조사 내용
								X (m)	Y (m)	B	L		X (m)	Y (m)	B	L	X (m)	Y (m)	B	L				직	성명	
1	1889	2	ㄱ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1	116						2012년09월09일	438252.62	176296.09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	1816	2	ㄱ	표철	남동구 만수동 984-9	97						2012년09월09일	438363.13	176307.87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	1818	2	ㄱ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0	97						2012년09월09일	438476.61	176392.44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	1815	2	ㄱ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0	97						2012년09월09일	438350.58	176336.46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	1801	2	ㄴ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1	100						2012년09월09일	438629.88	176419.94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	965	2	ㄴ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1	100						2012년09월09일	438763.11	176331.21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	934	2	ㄴ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0	90						2012년09월09일	438673.74	176293.38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	932	2	ㄴ	표철	남동구 만수동 1001	91						2012년09월09일	438793.85	176490.96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	927	2	ㄴ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9	86						2012년09월09일	438929.70	176402.75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0	729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2-6	138						2012년09월09일	438022.53	174030.50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1	688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1-1	135						2012년09월09일	438077.66	174008.58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2	687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1-1	138						2012년09월09일	438017.21	174002.27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3	681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2-5	138						2012년09월09일	438015.64	174077.69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4	682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2-5	138						2012년09월09일	437954.64	174070.98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5	684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2-7	138						2012년09월09일	437959.14	174023.80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6	650	2	ㄷ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31-3	135						2012년09월09일	438131.05	174014.87															중부원점	2012년09월09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7	1041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16	73						2012년09월10일	439117.85	175858.09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8	1042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16	73						2012년09월10일	439233.06	175867.37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19	1036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2						2012년09월10일	439200.31	175726.23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0	1037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2						2012년09월10일	439198.78	175755.72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1	1038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3						2012년09월10일	439194.06	175812.81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2	1039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3						2012년09월10일	439148.46	175809.83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3	1014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9	78						2012년09월10일	439070.48	175802.23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4	1013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7						2012년09월10일	439078.70	175717.78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5	1012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7						2012년09월10일	439041.26	175713.59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6	1009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6	77						2012년09월10일	438993.92	175711.02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7	1010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16	78						2012년09월10일	438983.24	175846.27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8	1011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17	78						2012년09월10일	439028.78	175849.93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29	1095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7	67						2012년09월10일	439257.73	175635.01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0	1094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7	67						2012년09월10일	439253.23	175682.76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1	1093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7	72						2012년09월10일	439248.19	175732.46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2	1040	2	ㄹ	표철	남동구 만수동 994-9	73						2012년09월10일	439120.49	175807.17																중부원점	2012년09월10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3	60	2	ㄷ	표철	남동구 간석동 700-5	18	2013년09월02일	4474.39	-14079.07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4	48	2	ㄷ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26	2013년09월02일	4470.45	-14117.91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5	58	2	ㄷ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26	2013년09월02일	4477.21	-14167.64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6	57	2	ㄷ	맨홀	남동구 간석동 218	35	2013년09월02일	4488.41	-14339.62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7	53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35	2013년09월02일	4496.96	-14393.20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8	51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34	2013년09월02일	4634.12	-14369.86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39	54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25	2013년09월02일	4624.28	-14312.44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0	55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218	25	2013년09월02일	4614.73	-14265.38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1	56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25	2013년09월02일	4607.39	-14214.12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2	59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8	25	2013년09월02일	4603.74	-14164.60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3	62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215-1	17	2013년09월02일	4603.29	-14080.51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4	63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700-5	17	2013년09월02일	4604.74	-14024.61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5	46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218	26	2013년09월02일	4475.49	-14236.36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6	45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218	26	2013년09월02일	4478.62	-14289.76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7	280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700-5	10	2013년09월02일	4384.74	-13797.61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8	84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700-5	18	2013년09월02일	4470.58	-13929.30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49	3631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700-5	17	2013년09월02일	4602.87	-13968.70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0	70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700-5	10	2013년09월02일	4414.05	-13840.02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1	64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700-5	18	2013년09월02일	4469.41	-13972.72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2	65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68-6	17	2013년09월02일	4630.99	-13958.26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3	66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700-5	17	2013년09월02일	4678.17	-13920.81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4	67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700-5	16	2013년09월02일	4728.61	-13888.43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5	68	2	□	표철	남동구 간석동 700-5	9	2013년09월02일	4672.48	-13799.58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6	50	2	□	맨홀	남동구 간석동 700-5	18	2013년09월02일	4473.03	-14026.58											가리원점	2013년09월02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7	803	2	ㄴ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6	87						2013년09월05일	438929.49	175081.88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8	1057	2	ㅂ	표철	남동구 구월동 1264-77	48						2013년09월05일	439294.56	175164.12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59	1035	2	ㅂ	표철	남동구 구월동 1264-77	58						2013년09월05일	439248.87	175160.63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0	903	2	ㅂ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3-1	71						2013년09월05일	439095.49	175196.28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1	899	2	ㅂ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3-1	71						2013년09월05일	439098.77	175149.50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2	900	2	ㅂ	표철	남동구 구월동 24-6	71						2013년09월05일	439107.25	175058.30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3	886	2	ㅂ	맨홀	남동구 구월동 1264-77	58						2013년09월05일	439200.15	175156.59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4	888	2	ㅂ	표철	남동구 구월동 1264-77	59						2013년09월05일	439196.34	175203.84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5	1033	2	ㅅ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4-6	59						2013년09월05일	439228.87	175378.54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6	1032	2	ㅅ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4-6	59						2013년09월05일	439182.63	175377.78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7	889	2	ㅅ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4-6	59						2013년09월05일	439190.60	175303.16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8	890	2	ㅅ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4-6	72						2013년09월05일	439094.24	175298.22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69	891	2	ㅅ	표철	남동구 구월동 1324-6	73						2013년09월05일	439056.82	175292.63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0	892	2	ㅅ	맨홀	남동구 구월동 1324-6	73						2013년09월05일	438980.38	175286.88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1	893	2	ㅅ	맨홀	남동구 구월동 1324-6	73						2013년09월05일	438975.32	175317.89							중부원점	2013년09월05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2	3000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5	229						2013년08월24일	431952.80	174436.13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3	2999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4	229						2013년08월24일	432043.37	174440.77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4	2998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5	210						2013년08월24일	432078.35	174448.71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5	2997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6	210						2013년08월24일	432137.70	174462.53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6	2996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7	210						2013년08월24일	432216.17	174495.12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7	2995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8	190						2013년08월24일	432295.89	174498.37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8	2994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769	169						2013년08월24일	432355.83	174529.89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9	2992	2	ㅇ	표철	남동구 고잔동	169						2013년08월24일	432394.10	174407.99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770	남동구 남촌동	69								2013년08월24일	435019.87	173795.57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0	2315	2	ㄱ	맨홀	남동구 남촌동 637	69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1	2313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7	60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2	2312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7	60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3	2328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7	59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4	2329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7	50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5	2546	2	ㄱ	맨홀	남동구 남촌동 637	58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6	2330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7	50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7	2331	2	ㄱ	맨홀	남동구 남촌동 637	50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8	2525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51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89	2324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51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0	2325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51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1	2327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52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2	2236	2	ㄱ	맨홀	남동구 남촌동 639	52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3	2523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9	52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4	2318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39	46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5	2319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52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6	2321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52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7	2322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61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
98	2544	2	ㄱ	표철	남동구 남촌동 640	61													중부원점	2013년08월24일	지적기사	이원재	재설치